##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 12.<br>기획행정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-의일자 및 발의자 : $\quad$| 2006 년 11 월 10 일 |
| :--- |
| 이필용의 원외 9 인 |

나. 회 부 일 자 : 2006년 11월 13일 다. 상정 및 의 결일자

제 255 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 4 차기획행정위원회
(2006.12.1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 • 토론,

심사의결(수정)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필용 의원)

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•효율성•투 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3 가지의 경우로 제한함(안 제 4 조제 1 항).

나.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, 특별회 계와 기금은 설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함(안 제4조제2항).

다.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함(안 제5조).
라. 금고지정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, 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,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, 금고업무 관리 능력, 도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기준으로 함(안 제6조)

마. 금고지정 방식 결정,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•심의•평 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둠 (안 제7조제 1 항 및 제 2 항).

바.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,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관계공무원 등 9 인 이내로 구성함(안 제7조제3항)

사.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며,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함(안 제 7 조제 4 항 및 제 5 항)

아. 금고는 계약기간 만료 30 일전까지 지정하도록 함(안 제8조 제4항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가.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 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•효율성 •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임.

나.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2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절차를 정하 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」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음.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## V. 토론요지 : "생략"

## VI. 수정안 요지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. 12. 14(제255회 제4차)

기획행정위원장
2. 수정이유

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4조제 1 항제 3 호를 삭제 하고, 제 5 조의 금고 약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
3. 수정주요내용

가.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삭제(안 제 4 조제 1 항제 4 호)
나. 금고의 약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안 제5조)

- 금고 약정기간 : 4 년 $\Rightarrow 2$ 년
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VI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

제안연월일 : 2006. 12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$\underline{\underline{\text { 수정이유 }}}$

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를 삭제하고, 금고의 약정기간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## 수정주요내용

가.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 삭제( 안 제 4 조제 1 항제 3 호)

- 안 제 4 조제 1 항제 3 호 "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" 삭제

나. 금고의 약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안 제5조)

- 금고약정기간 : 4년 $\rightarrow 2$ 년


##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 4 조제 1 항제 3 호를 삭제한다.
안 제 5 조중 " 4 년"을 " 2 년"으로 한다.

## 수정안대비표



##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（목적）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 77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（이하＂금고＂라 한다）의 지정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，효율성，투 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．

제2조（용어의 정의）（1）＂금고＂라 함은 충청북도지사（이하＂도지사＂라 한다）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，각종 세입금의 수납，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 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．
（2）＂경쟁방법＂이라 함은 2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•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． （3）＂수의방법＂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 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．
（4）＂금고지정＂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．
（5）＂금고약정＂이라 함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 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．

제3조（적용범위）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일반회계，특별회계，기금의 금 고 지정에 적용한다．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 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．

제4조(금고지정) (1)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 고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 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 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(2)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 5 조(약정기간)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2 년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.

제6조(지정기준)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 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
2. 충청북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
3.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
4. 금고업무 관리능력
5. 충청북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

제 7 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(1)도지사는 금고 지정시 필 요한 사항을 심의 - 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(2)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
2.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•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(3)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5. 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인
6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
7.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2 인
(4)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,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(5)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 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 니한다.
(6)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 정방식을 심의 -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지정절차) (1)도지사는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 까지 도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(2)도지사는 제 1 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 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다.
(3)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 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

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•심의한 후 "금융기관별 심의표"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 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4)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 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 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금고 약정) (1)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 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(2)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(3)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각종 법령 - 조례 - 규칙의 준수의무, 세 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 용부담 및 수수료, 약정해지, 약정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(4)도지사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 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금고약정의 해지) (1)도지사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(2)도지사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 일 전까지 금고운 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(3)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하며, 금고의 약 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- 의결한다.

제11조(금고운용 보고) (1)금고는 일반•특별회계•기금별 자금운용 상 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 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도지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
(2)제 1 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,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 12 조(참석수당 등)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13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(1)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(2)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금고 약정은 그 만료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 $\square$ 지방재정법

제77조（금고의 설치）（1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 고를 지정하여야 한다．
（2）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，시•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，시•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•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．
（3）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． 제79조（금고에 대한 검사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 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•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．

제80조（금고의 배상책임）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 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•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 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상법」을 적 용한다．

제81조（공금취급의 제한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•수납•보 관•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．

## $\square$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 102 조（금고업무의 약정）（1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7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 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，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•규칙

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(2) 법 제 7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 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,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제104조 (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) (1)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 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 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.
(2)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 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한다. 다만, 제 78 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106 조 (금고에 대한 검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7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 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

